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급·수령 허가 요건 추가〉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21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지급·수령 허가 요건으로 추가 (안 제15조제2항제2호)	2
[참 고]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용혜인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19.

다. 회 부 일 : 2024. 12.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가 간의 군사적 대립, 난민의 발생 등으로 인한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음.

이에 지급절차 중 허가를 필요로 하는 요건에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제2호).

Ⅲ. 검토의견

1.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지급·수령 허가 요건으로 추가 (안 제15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 지급절차 등 (§15) - 기재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해 환전·송금·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 정할 수 있음 (제1항) - 기재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음 (제2항)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을 <u>유지하기</u>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급절차 등 (§15) - (현행과 같음) - 기재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음 (제2항)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을 <u>유지하고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u>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안은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지급·수령 허가요건으로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지급 및 수령은 1992년 9월 동법의 전신인 「(구) 외국환관리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당초 “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positive system)¹⁾”에서 “원칙 자유·예외규제 체계(negative system)²⁾”로 전환됨³⁾.

이에 따라 동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자유를 부여하지만 ①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및 ②국제 평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³⁾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규율하고 있음.

개정안은 지급·수령 허가요건으로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을 위해서도 동 법에 따른 지급·수령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1)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지급)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대한민국내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외국에 대한 지급
2.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지급의 영수
3. 비거주자를 위하여 거주자에게 행하는 지급 또는 그 지급의 영수
4. 비거주자와의 계정간의 이체

② 전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 체재함에 수반하는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비등의 비용을 지변하기 위한 내국통화에 의한 지급이나 비거주자가 대한민국내에서 허용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내국통화에 의한 지급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상복, “외국환거래법”, 박영사, 2021, p. 6.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9조(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지급 또는 수령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5조제2항은 지급·수령 허가요건의 대강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기획재정부 고시)」에서 국제사회가 부과한 금융제재를 감안한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있음.

동 지침 제2조(적용범위)⁴⁾에서는 금융제재 적용 범위를 열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및 미합중국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를 기준으로 삼아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제재의 대부분은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차원의 제재인 것으로 보임⁵⁾.

따라서 개정안은 현재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가하는 현실을 법률에 반영하는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음⁶⁾.

다만, 국내외 법령에서는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같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재요건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4) [참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기획재정부 고시)’ 참조.

5) 다만, 외교부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4호의 근거가 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주로 평화·안보를 저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을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나,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및 전쟁범죄가 명시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6) 현행 법체계상 현행법 하에서도 기획재정부 고시 개정만으로 후술할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관련한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획재정부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또는 미합중국의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등 국제사회가 기본적으로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만 금융 제재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동법과 유사한 체계를 가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⁷⁾ 관련 규정에서도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로 규율하고 있고,

UN 헌장 제7장 제39조(UN Charter Chapter VII Article 39)⁸⁾에서는 제재 요건으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요건에 ‘인권침해’ 사항을 포함해 운영 중⁹⁾임.

우리나라와 유사한 외환법 체계를 가진 일본 역시 UN의 요건을 감안해 우리 현행법과 동일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로 규정¹⁰⁾하고 있으

7)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8) [UN 헌장] Article 39 The Security Council shall determine the existence of any threat to the peace, breach of the peace, or act of aggression and shall make recommendations, do decide what measures shall be take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41 and 42,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9)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현황(2022)]

Designation Criteria(지정 기준)

In most sanctions regimes, the Council establishes designation criteria for the listing of individuals and entities for targeted measures. Some common designation criteria include: threats to peace, security or stability,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obstruction of humanitarian aid.

10) 일본 「외국환및외국무역관리법」 제16조제1항 (영문 번역)

When the competent minister finds it to be necessary in order for Japan to sincerely implement a treaty or any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it has signed, when the competent minister finds it to be particularly necessary in order for Japan to contribute to international effort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or when the cabinet decision referred to in Article 10, paragraph (1) is made, the competent minister may,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Cabinet Order, impose (후략)

므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금융제재에 동참하는 것을 감안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¹⁾

참고로,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민주화 상징’인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감금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였음. 이에 제21대 국회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UN 등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108338호)을 의결함.

동 결의안의 후속조치로 용혜인의원은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촉구 결의안¹²⁾’(의안번호 제2109729호)을 대표발의했고 본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11) 참고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외환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현행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내법령 또한 유엔 헌장 문안에 근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12)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촉구 결의안’ 주문 中

대한민국 국회는 미얀마 사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포스코 등의 기업들의 미얀마 내 사업 내용과 자금 흐름을 긴급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미얀마 내 사업중단 및 배당금 지급유예 등을 권고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얀마 사태를 군부 쿠데타로 규정하고 국제 제재를 의결하는 데 반대한 중국·러시아·인도·베트남을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해당 국가들이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 협력하도록 외교 채널을 통해 설득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시아 국가들에게 미얀마 군부 제재 방안, 군부에 우호적인 국가들에 대한 설득과 압박, 정통성 있는 정부의 승인, 난민 문제 등 미얀마 사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외무장관급 국제회의 개최를 제안할 것을 촉구한다.

번호 제2116394호)을 대표발의하였음. 그러나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개정안 등이 폐기됨에 따라 제22대 국회에서 본 개정안을 재발의함.

다만, 현재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관련해서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제재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법령상으로는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된 금융규제가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지급절차 등) ① 기획재정부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지급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려는 거주자·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려는 거주자에게 그 지급 또는 수령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 ----- ----- ----- ----- ----- -----.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 (현행과 같음)
2.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 <u>유지하고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u> ----- -----

문의처

02)6788-5155

참고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기획재정부 고시)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등과 거주자 및 비거주자간의 지급 및 영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금융제재대상자 등

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751호 및 제1907호(각 1992년, 2009년 : 소말리아 및 에리트리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751호(1992년) 및 제1907호(2009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명한 자
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267호, 1989호 및 2253호(각 1999년, 2011년 및 2015년 : ISIL, 알카에다 관계자 등에 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 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18호(2003년 : 후세인 정권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18호(2003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21호(2003년 : 라이베리아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21호(2003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5.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33호(2004년 : 민주콩고공화국 내전 관련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33호(2004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6.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72호(2004년 : 코트디부아르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72호(2004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7.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591호(2005년 : 수단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591호(2005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8.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 : 북한 미사일 · 핵 · 대량살상무기 관련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1718호(2006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9.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31호(2015년 : 이란의 핵확산 민감활동 또는 핵무기 운반 체계 개발 중단 합의 등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2231호(2015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0.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70호(2011년 : 카다피 정권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1970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1.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988호(2011년 :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탈리반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2.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127호(2013년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2127호(2013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140호(2014년 : 예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2140호(2014년)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4.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06호(2015 : 남수단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이사회 결의 제2206호(2015)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지명한 자
15.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224호에 따라 지명한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6.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382호 및 이란금융제재규정(IFSR)에 따라 지명한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7.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Executive Order) 제13573호 및 제13582호에 따라 지명한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8.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19. 그 밖에 국가의 안전 및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산업통상자

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 지침에 따라 지정한 자

② 제1항의 금융제재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이란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이란에 소재하는 단체